

이근안 고문사건관련 진상 조사결과

-1999. 12. 16. 서울지검 강력부

출처: 2001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일시: 2001년 9월

李根安 拷問事件關聯
眞相 調查結果

1999. 12. 16.

서울地方檢察廳
強 力 部

< 별첨 >

이근안 고문사건관련 진상 조사결과

'99. 12. 16. 서울지검 강력부

1. 개 요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는 '99. 10. 28 김근태(金槿泰) 고문수사 등 가혹행위로 도피 중이던 이근안(李根安)이 수원지검 성남 지청에 자수함에 따라, 즉시 신병을 인수받은 다음 강력부장의 총괄 지휘하에 조사검사 3명, 검찰수사요원 8명, 파견경찰관 7명, 국세청 직원 4명 등 총 23명으로 조사팀을 편성, 지금 까지 1개월 반에 걸쳐 방대한 관련기록 검토, 70여명에 달하는 관련자 조사 및 수주간에 걸친 계좌 추적등을 통해 이근안의 10년 10개월에 걸친 도피행적, 고문사건의 진상 및 관련 배후 세력 등 전반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엄정한 조사를 하였음
- 조사결과, 이근안의 김근태 고문관련 내사사건에 대하여는 '99. 8.15. 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내사종결하였으며, 박처원(朴處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은 이근안에 대한 도피자금 지원혐의가 인정되어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구공판하였고, 민변 및 민가협에서 고발한 함주명(咸柱明) 관련 고문 및 위증사건에 대하여는 '90. 4.19. 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음
- 검찰은 이번 사건이 비록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불가능한 시안이 대부분이지만, 새로운 천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지난 날에 이루어진 고문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함으로써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 땅

에서 고문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진상조사에 임하였음

- 검찰은 고문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 “김근태 고문사건”의 경우, 이 사건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및 권인숙양 성고문사건과 더불어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발생한 소위 “3대 고문사건” 중 하나라는 상징성과 이근안의 고문행위가 드러나 도피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라는 비중을 감안하여 고문 행위의 실체뿐만 아니라 고문수사의 ‘윗선’ 등 지휘체계 및 배후 관계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규명에 진력하였으며
 - 반제동맹사건 및 함주명 간첩사건의 경우, 고문행위의 실상에 국한하여 진상조사를 하였음
- 조사결과,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수사 관련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고문가담 행위 등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함으로써, 고문행위의 구체적인 진상이 규명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들은 고문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였음
- 한편, 김근태, 박충열, 함주명 등 고문 피해자들은 고문 경찰관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이를 받아들여 화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검찰의 이번 진상조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근안의 도피행적 및 고문사건과 관련하여 고문행위의 실행내역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한정하였으며, 고문행위의 전제가 되었던 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진위 내지 혐의유무에 대한 진상확인은 그 범위에서 배제하였음을 밝혀 드림

2. 이근안의 자수동기 및 경위

가. 자수 동기

- 이근안은 장기간에 걸친 도피·은신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 및 자수직전인 '99. 10. 21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남북어부 김성학(金聲鶴)에 대한 고문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부하 경찰관 이우세등 6명 전원이 유죄선고를 받고, 그 중 3명이 법정구속까지 된 데 대한 자책감 등이 겹쳐 자수를 결심하였으며,
- 특히 자신에 대한 재판시효가 2013년 10월까지 연장된 데 따른 계속도피 자신감 상실이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98년도 들어 한때 자수를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박처원에게 검찰에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처를 통해 전달한 사실도 있었으나,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자수를 포기한 사실도 있었음

나. 자수 경위

- 자수경위에 있어 최종적으로는 가족회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일부 항간에 나돌았던 "정책적 자수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경찰이 아닌 검찰에 자수한 이유는, 경찰에 자수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였으나 그 경우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검찰을택하였으며,

- 서울지검이 아닌 성남지청에 자수한 이유는, 이근안 자신에 대한 “납북여부 김성학 고문사건” 재판이 성남지원에 계류중이었으므로 대웅 검찰청인 성남지청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이근안의 도피행적

가. 해외도피 여부

진상 개요

- 도피기간중 해외도피 여부는 “김근태 고문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검찰은 이근안이 중국 또는 일본으로 도피하였다는 다양한 제보에 대한 진상확인과 함께 해외도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였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 기타 해외도피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여 결국 해외도피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김근태 고문사건”的 경우 ‘99. 8.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

중국도피 의혹 진상

- 이근안이 ‘98. 6.경 중국 북경 소재 한경賓館(韓京賓館)호텔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 목격자 3명(신00, 권00, 이00) 등과 대질조사하고 동 호텔사장 이00(여, 31세) 부부 등과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이근안 추정인물은 외모가 비슷한 김00(62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동인은 나이, 짙은 눈썹, 건장한 체격 등 전반적인 용모가 이근안과 비슷하나 오른쪽 귀 안쪽에 큰 사마귀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표준말 말씨 등이 다름
- 김00는 '97. 6. 3.부터 '99. 1.18.까지 동 호텔 영업사장으로 근무 하였으며, 현재는 상해에서 한국식당을 경영하고 있음
- 이00 사장과 김00는 KBS 위성방송 뉴스를 통해 이근안의 모습을 보았으며 이00 사장이 김00에게 전화하여 "김00사장과 너무 닮았다"는 대화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일본도피 의혹 진상

- 한편, '91.경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근로자로 함께 일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유00, 홍00 등 관련자들과 대질조사한 결과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도피행적 부분

(1) 도피지시

개 요

- 이근안은 '88.12.21.경부터 언론 등에 의해 5공비리사건 중 하나로 김근태에 대한 고문수사 장본인으로 지목되자 '88.12.24.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도피를 시작하였음

구체적 경위

- 같은 날 10:00경 박처원의 연락을 받고 18:00경 수원 소재 경기

도경 대공분실 부근 모 경양식점에서 박처원을 만났으며 당시 김수현 경감, 백남은 경정도 동행하였음

- 직후 인근 승용차로 자리를 옮겨 차안에서 박처원은 이근안에게 “미안하다. 사건을 잘 하려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가 되니 본부가 뭐가 되느냐. 김근태 고문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고 심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까지 개제되면 곤란하니 일단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도피지시를 받고 도피를 결심하였음

(2) 도피 행적

개요

- 이근안의 도피생활은, 지방도피(‘88.12.24.-‘89. 1.) 지방도피 및 단독은신(‘89. 1.-‘90. 1.) 단독은신(‘90. 1.-‘90. 7.25.) 가족과 동거 (‘90. 7.26.-‘99.10.28.) 등 4단계로 이루어졌음

지방도피시

- 도피당일인 ‘88.12.24. 처로부터 받은 돈 300만원을 갖고 마스크, 안대, 중절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변장한 채 그날 22:00 수원발 부산행 야간열차 편으로 다음날 새벽 부산에 도착한 이래 ‘89. 1.경까지 기차를 이용하여 부산, 경주, 울산, 영주 등지를 여행 하였음

지방도피 및 단독은신시

- 89. 1.경부터 ‘90. 1.경까지는 기차를 이용한 지방여행과 일원동

소재 공무원 임대아파트 은신을 병행하였음

- 도피자금이 필요하면 필요한 금액 또는 귀가일 등을 적은 쪽지를 안방 옷장 하단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처와 연락하였으며, 감청을 우려해 가족과 전화통화는 일체 하지 아니하였음

단독은신시

- '90. 1. 이후부터 7.까지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 단독은신 생활을 하였는데, 처 등 가족이 마련해 온 재료를 이용, 주로 직접 요리하여 식사를 하였음
- 이웃집에서 인기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할 경우 수도꼭지에 행주를 감아 싱크대 바닥까지 늘어뜨리고, 물을 내려보낼 때는 싱크대 마개를 수채구멍 위에 비스듬히 엎어 틈을 조금만 벌려 물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였고
- 용변 후에는 이웃집에서 물내리는 소리가 날 때를 기다려 변기 레버를 동시에 누르는 등 용의주도하게 생활하였음

가족과 동거시

- '90. 7. 경부터는 자수 직전까지 용두동 일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거지 집안에서 은신한 것으로 밝혀졌음
- '90. 7.26.부터 '92.10. 6.까지는 용두동 소재 '이불집' 전셋집, '92.10. 7.부터 '95. 7.14.까지는 용두동 소재 병원집 전셋집, '95. 7.15.부터 자수할 때까지는 용두동 현 주거지에서 생활 하였음

- 주로 맨손체조, 운동기구, 쑥뜸 등으로 체력단련을 하였으며 어학, 컴퓨터 등 각종 공부와 자료정리로 소일하였고, 특히 “여호와의 증인” 장로인 손위 처남 신00(72세) 부부의 권유와 자료제공에 따라 성경공부에 열중하였으며, 자서전 집필구상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음
- 기간 중 성경, 외국어,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및 침술 등 총 5개 분야 39권의 자료를 정리하였음
- '95. 7.경부터 '99. 8.경까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쑥뜸을 하여 은신방의 천장, 벽 도배지가 누렇게 탈색되었으며, '98. 4. 경에는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광이회 등으로 조촐하게 환갑식사를 하기도 하였음

도피증 접촉인물

- 이근안이 도피·은신중 가족 외에 접촉한 인물로는 김수현(전 치안본부 대공분실 2반장) 및 손위처남 부부 등 극히 제한된 인물들로 국한되었으며, 박처원은 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 도피 지원·방조관련 진상

(1) 개 요

- 도피초기 약 3년 동안 경기도경 대공분실 직원들이 매월 2만원씩 각출, 30만원을 모금하여 이근안의 처에게 생계보조비로 지원하였으며, '98. 6.29. 박처원이 이근안의 처에게 1,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 그 외 경찰조직 차원에서 또는 다른 제3자가 이근안의 도피를 지원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2) 박처원의 도피자금 지원진상

지원 경위

- 이근안은 '97.경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처를 통해 박처원에게 주거지 암류사실등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자금지원을 부탁하는 편지를 3회 보냈으며, 김수현도 박처원에게 이근안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개진하자
- 박처원은 '98. 6.29. 옥수동 현대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이근안의 처를 불러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5매를 교부함으로써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김수현에게도 생활비조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음
- 박처원은 이근안에 대한 자금지원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수표 추적 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시인하였음

자금의 출처

- 박처원이 이근안에게 지원한 돈 1,500만원은 '89.12. 초순경 김우현(金又鉉) 당시 치안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음

(3) 박처원이 관리한 10억원 자금 관련 진상

10억원 마련경위

- 박처원은 김 치안본부장에게 대공문제 관련 연구소 설립을 통한 전직 대공수사요원 후생복지방안 수립 및 기금마련을 건의하였으며, 김 치안본부장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후, '89. 12. 초 10억원을 박처원에게 교부하였음
- 김 치안본부장은 동 자금마련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라 0 (당시 43세, '95. 3. 사망)의 소개로 파라다이스개발주식회사 전낙원(田樂園) 회장을 만나 동인에게 경찰조직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기부를 요청하였고,
- 전낙원은 경찰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순수한 뜻과 함께 카지노 사업을 위해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부액수에 대해 고민하던 중 10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약 10일 후 필동 부근 일식집에서 김 치안본부장에게 수표로 10억원을 전달하였으며,
- 김 치안본부장은 위 돈을 구본우(具本禹)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1부장을 통해 박처원에게 전달하였음

10억원의 관리 현황

- 박처원은 10억원을 서울신탁은행 여의도 충부지점에 자신의 명의로 개발신탁 구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이자는 “현대비교문화연구소 박처원” 명의로 별도 개설한 구좌로 자동이체받아

관리하였으며,

- '97.10.경부터는 하나은행 옥수역지점, 98. 4.경부터는 동 은행
석관동지점의 정기예금 구좌로 이체, 관리하여 왔음

10억원의 사용처

- '99.11. 중순 현재 예금잔고는 총 6억 9,300만원이며, 그 동안
이자 및 원금 감소분 합계액은 9억 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계좌추적 결과 확인되었음
- 조사결과 9억 8,000만원의 사용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근안을
비롯하여 다른 전직 대공수사요원에게 달리 자금지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일시(기간)	사 용 내 역	사용금액	비 고
'89.12.-'93. 9.	박처원이 운영한 '현대비교문화 연구소' 운영비(인건비, 공과금, 박처원 활동비, 초청강사료 등)	약 2억 2,000만원	월 평균 480만원
'93. 9.-'99.11.	박처원 부부 치료비(간병비 포함) 및 기사월급, 생활비	약 4억 9,000만원	월 평균 650만원
'96. 8.	승용차 구입비	6,000만원	
'95. 2.	타인 대여금	8,000만원	· 박남호 5,000만원 · 장향섭 3,000만원
'98. 6.29.	이근안 도피자금 지원	1,500만원	
"	김수현 생활보조금 지원	500만원	
'98.11.23.	옥수동 소재 중앙하이츠 아파트 보 증금	3,000만원	
'99.11. 2.	김수현등 고문경찰관 구상금 지 원	8,000만원	
	합 계	9억 8,000만원	

10억원의 성격

- 박처원은 위 돈은 자신이 운영한 “현대비교문화연구소” 운영 자금 및 자신에 대한 위로금 기타 대공수사요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비 등에 충당하기로 김 치안본부장과 협의된 것으로 전적으로 자신이 관리·처분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위 돈을 마련하여 교부한 김 전 치안본부장이 의식불명 상태로서 진술을 들을 수 없는데다가 당시 치안본부 간부들이 모두 동 자금의 조성이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돈이 치안본부 소유 등 공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임

4. 검찰 및 경찰의 추적수사 상황

가. 검찰의 추적수사 상황

추적수사반 편성등

- 검찰은 이근안 도피 직후 이근안에 대하여 지명수배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 '89. 1. 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추적수사반을 편성하여 주거지와 연고지 등에 대한 추적수사를 전개하였으며
- '93. 3. 이후에는 서울지검 강력부에 추적전담반을 편성하여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관 등 10명을 2개반으로 나누어 지속적인 자체 추적수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찰의 추적검거활동을 독려하여 왔음

추적수사 활동내역

- 그 동안 일원동 소재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용두동 주거지에 대한 탐문 및 수색, 미용실 주변 잠복, 탐문 및 가족 미행과 연고지 추적수사 등을 총 8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 용산, 청량리, 마장동, 논현동 등 서울시내 뿐 아니라 군포시, 홍천군 등지에서 이근안을 보았다는 주민제보에 따라 즉각 출동하여 확인하였으나 모두 허위제보 또는 동일인이 아님이 판명 되기도 하였음

추적수사 특이사항

- '89. 2.경 검찰 추적반이 일원동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찾아가서 가족의 동의 하에 아파트 내부를 확인·점검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이근안은 안방 옷장 안에 숨었는데, 다른 곳은 모두 확인하고도 옷장을 미처 열어보지 않는 바람에 체포를 모면한 사실과
- '95. 봄 무렵 용두동 '병원집' 주거지에 혼자 있을 때 검찰수사관들이 찾아왔으나 인기척이 없자 그냥 돌아간 사실이 이근안 조사결과 확인되었음

나. 경찰의 추적수사 상황

수사전담반 편성등

- 경찰은 '88.12.30.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에 9명으로 수사전담

반을 편성하였고, 연고지 및 공범자 관할청인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14개 경찰서에 연고지 추적 검거반(인원 41명)을 편성·운영하였으며

- 이근안을 중요지명수배자로 분류, 전국에 26회 검거 지시 및 그 동안 358회에 걸쳐 검문검색을 실시하였음

추적검거 활동내역

- 경기도경 추적검거반은, 이근안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수십회 방문하여 이근안의 소재를 탐문하였으며, 관내 거주하는 이근안의 누나, 사촌형, 사촌여동생 등 연고선을 상대로 소재 확인 500여회, 제보 확인 5회, 검문검색활동 150여회를 실시 하였음
- 동대문경찰서와 용두파출소에서는, 도피 초기에는 1주일에 1회 정도, 그 후 자수시까지는 매월 1회 정도 미용실을 방문하여 소재탐문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받았음

5. 김근태 고문사건

가. 고문사건 개요

- '85. 8.30.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수사단에서 민추위 사건으로 문용식을 수사하던 중 NDR(민족민주혁명론)의 배후 인물로 민청련 의장 김근태를 지목,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 '85. 9. 4. 서부경찰서에 구류중인 김근태를 연행, 수사를 시작 하였으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가 부진하자

-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은 평소 고문기술이 뛰어난 이근안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을 투입시켜, 이근안의 주도하에 제2과장 윤재호, 반장 김수현, 반장 백남은, 반원 김영두, 최상남, 정현규, 박병선, 전사문 등 대공수사요원 9명이 약 23일간에 걸쳐 김근태의 옷을 벗기고 고문대(속칭 칠성판)에 눌힌 후 전기고문, 물고문, 고추가루고문 등 총 10회에 걸쳐 자행한 사안임이 밝혀 졌음

나. 수사배경 등 관련

(1) 개요

- 김근태에 대한 수사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의 자료제공과 사실상의 조정하에 박처원을 비롯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수사업무를 전담하였으며,
- 박처원 단장은 이근안의 수사투입을 건의하였고 수사진행상황을 박배근(朴培根) 당시 치안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정형근(鄭亨根)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에게도 수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2) 구체적 내용

- 수사 전후하여 안기부 직원이 김근태에 대한 2년간 미행자료 및 사진, 도청자료, 미국 주재기자 심기섭의 민청련 자금지원 내력, 김근태의 친형 3명의 월북자료 등을 수 회에 걸쳐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팀에 제공하였으며
- 박처원은, 김근태 연행 다음날인 '85. 9. 5. 아침 김근태에 대한 내사담당 주무 단장인 정형근 대공수사 단장이 남영동 분실을

방문하여, 묵비권 행사 등 수사상황을 보고 받고는 “흔을 내서라도 철저히 밝혀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박처원은 박배근 치안본부장에게 건의하여 이근안을 그날 저녁부터 수사에 투입시킨 것으로 밝혀졌음
- 박처원은 단장실 CCTV 화면을 통해 김근태 고문수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조사실로 찾아가 김근태의 뺨을 때리는 등 고문행위에도 직접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6. 반제동맹사건

가. 사건 개요

- 반제동맹사건은 '86.10.31. 인천 동부경찰서에서 위장취업자 검문중 주민신고로 거동수상자 박충렬(朴忠烈) 등을 검거, 소지품 중 이적표현물, 반제동맹 조직원명단 등이 발견되자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공조수사하여, 박충렬 등 17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안임

나. 고문수사 내용

- '86.10.31.부터 11.30.까지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하면서,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을 중심으로 한종철(일명 백곰, 당시 경장) 등 대공분실요원들이 박충렬 등 17명에게 소위 통닭 구이, 날개꺾기, 관절꺾기, 고춧가루고문, 물고문 등을 자행 하였으며,
- 당시 고문행위에 가담한 수사요원은, 이근안을 비롯하여 한종철,

라 송, 서성식, 윤기영, 현화영, 이길환, 경무현, 박국목, 김태경, 최진수, 이강훈 등 12명인 것으로 밝혀졌음

7. 민변, 민가협의 함주명관련 고발사건

가. 간첩사건 개요

- 함주명 간첩사건은 '82. 말경 치안본부에서 첩보를 입수, 내사중 '83. 2.18.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함주명을 연행, 수사하여 간첩혐의로 입건한 사안임

나 고문수사 내용

- '83. 2.18.부터 4.20.까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근안의 주도하에 이봉구 등 대공분실 요원들이 함주명에게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고문 등을 자행하였으며
- 당시 고문행위에 가담한 수사요원은, 이근안 및 이봉구, 이동구, 최병갑, 최평선, 이춘웅 등 6명인 것으로 밝혀졌음

다. 고발사건 처리

개요

- '99.11.11.자 민변 및 민가협에서 함주명에 대한 독직폭행 및 위증 혐의로 이근안을 서울지검에 고발하였음
- 조사결과 고문 등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90. 4.19.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금일 공소권없음 처리하였음

고발인의 공소시효 배제주장에 대한 판단

- 고발인들은 “고문방지협약” 등에 의거 공소시효가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고문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없음
- 또한, 고발인들이 원용하고 있는 “전쟁범죄및반인도적범죄에 관한공소시효배제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협약인데다가 세계적으로도 43개국만이 가입한 정도로 국제적인 관습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동 협약에서 말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전쟁범죄, 인종 말살, 인종청소와 같은 대량학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통상 수사과정에서의 고문행위인 이 건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 고발건과 관련하여 이근안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고문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특별 법률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동 규정 신설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법치주의 국가의 형사처벌에 있어 필히 준수되어야 할 대원칙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고발인들의 공소시효 배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8. 맺음 말

- 검찰은 이번 진상조사에 있어, 지난 어두웠던 시절에 이루어진 고문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수 관계자들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 결과, 비교적 소상하게 진상을 밝히게 된 점을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함

- 다만, 십 수년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요 관련자가 사망하거나 일부 관련자의 진술 회피 또는 허위진술 등 제약으로 인해 보다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쉽게 생각함
- 이번 진상조사는 결코 과거의 관련기관이나 관련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한 소위 “과거들추기” 차원의 조사가 아니며, 고문관련 실상 그 자체를 사실대로 규명함으로써 이 땅에서 고문이 영원히 근절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록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이 대부분이었음에도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림